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06225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공우주, 자동차, 모바일 기기 산업을 위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전자회로 설계 전문 소프트웨어인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약1400)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2018. 8. 7. 총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사 22층 사무실에서 IP주소(IPV4 1 생략)가 할당된 MAC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피해자 F회사¹⁾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C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F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인 1,600만 원이다.

2) 판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소개자료(갑 제2호증)에 의하면 라이선스 타입은 'G', 'H', 'T' 3종류가 있고 각 라이선스 타입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책



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위 'I' 중 영구 라이선스 일반 버전은 1,600만 원, 영구 라이선스 스타트업 버전은 1,050만 원, 1년 구독 라이선스는 550만 원에 각 판매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로 이용한 버전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인데,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1년 구독 라이선스가 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무료 교육,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조호연

 판사 이윤재